

무기계약근로자(도로보수원) 채용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

2019년도 제1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무기계약근로자(도로보수원) 채용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27일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
1. 추가합격자 명단

채용직종 및 분야	근무기관 (모집단위)	응시번호	비고
무기계약근로자 (도로보수원)	홍천국토	홍천도로-19005	

* 통보방식 : 본 공고 및 개별통보(SMS 통보 / 별도 유선통보는 없음)

2. 임용관련 서류 제출 안내

가. 제출서류('19. 6. 27.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)

-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*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전부 기재된 것으로 발급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
* 군경력 포함 발급
-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)
- 사진(3cm × 4cm) 3매(6개월 이내 촬영분)

나. 제출기간 및 제출처

- 제출기간 : 2019. 7. 4.(목), 18:00 까지
- 제출처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방문 제출)
 - 주소 :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, 원주지방국토관리청
 - 참고홈페이지 : <http://www.molit.go.kr/wrocm>
- 유의사항 : 임용관련 서류 제출 시, 근로계약 체결예정으로 우편접수는 불가
☞ 반드시,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추가합격자 유의사항

- 추가합격자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'19. 7. 4.(목), 18:00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로 방문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기간 내에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보수원으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(채용 포기)으로 간주합니다.
- 기타 서류제출 관련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(☎ 033-769-5703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3.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

- 추가합격자 통보 후, 채용 포기, 합격 취소,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의 차순위 득점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[서식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서식] <개정 2015.9.25.>

(앞쪽)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cm × 4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(한 자) ()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안 질 환		이비인후질환	
치 아		호흡기질환	
간 질 환		신경질환	
소 화 기 질 환		피부질환	
순 환 기 질 환		정신질환	
비 뇨 기 질 환		혈청검사(매독)	
흉부X선 검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합 격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합 격 <input type="checkbox"/> 판 정 보 류	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추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- '매독(syphilis)'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'혈소판 감소 자색반'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- ※ 판정 오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